도시공간의 효율적·창의적 활용을 위한 '입체도로' 도입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2017.2.15.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7년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체도로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국·공유지로서 공공의 영역으로 여겼던 도로 공간의 민간 개발이 허용된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더불어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이 신설되며,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 안전 관련 지침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 |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인근 사유지 연계 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 규제 완화,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 협소한 부지로 주차 공간의 확보와 보행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해 주차장 통합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할 때에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융·복합을 통한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조성,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창의적인 건축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입체 건축 경진대회 등도 열어 창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용도가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 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 도로 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하여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등을 허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체계도 구축한다.

건축 융·복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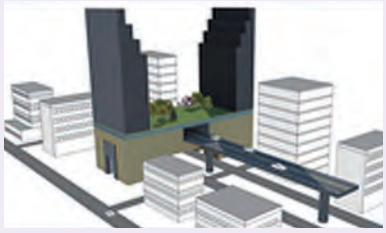

도로-건물 일체화

건물옥상 간이휴게소

자료: 국토교통부(2017), "도로의 변신! 입체도로의 시대 도래...도로 상·하부 활용", 2월 16일자 보도자료.

보행자·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2017.2.14.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2017.2.13.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도로·철도·항공·해양 부문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특히 도로 부문에 있어 2021년까지 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 확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점차 하향하며, 특히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 및 보도 설치 확대,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보행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을 확정·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계획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일반버스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의 기준 적합 설치율 82%로 향상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점자블록 등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기준 적합 설치율 73%로 향상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 2021년까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 42% 달성 ·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100% 달성 · 교통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실시
연구개발 사업 추진	·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 농어촌 지역,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완료 및 상용화 · 시·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 연계 방안 연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2017.1.20.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참여자 간담회 및 문화컨설팅'을 지난 1월 열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2013)상의 법정평가로,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또는 계획에 대해 문화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벌였으며, 간담회 겸 컨설팅을 통해 해당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행사에는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던 개별 평가기관과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문화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데 문화영향평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화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경북 안동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제주시 총 5개 지역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2016년 이루어짐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17.2.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음압격리병실의 구비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300개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300개 병상당 1개, 추가 100개 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 300개 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300개 병상당 1개 구비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기존에 입원실 면적 기준만 명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입원실당 최대 병상 개수, 병상 간 거리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병·의원 입원실당 병상은 최대 4개, 요양병원은 최대 6개까지 허용된다.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까지 1m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입원실 면적 기준도 1인실은 6.3m^2에서 10m^2,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m^2에서 6.3m^2로 넓어진다.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을 기존 10m^2에서 15m^2로 더욱 강화하였다. 병상 간 거리는 신·증축할 경우 2m,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까지 1.5m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구비하고,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확보하되 그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로 하도록 하였다.

도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017.1.9.

국토교통부는 도시 시설물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재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SOC 성능 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제명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변경된다.

'3종 시설물' 신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가 시설물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교통부(「시설물안전법」)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대형·중형 규모의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재난법」에서는 소형 시설물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구분에 '3종 시설물'을 신설하고,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이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하게 된다. 또한 대형 중형 시설물뿐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성능평가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사용성 등을 추가하여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성수·문래·종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7.2.6.

서울 성수동, 문래동, 종로 등 3곳이 국내 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다. 50인 이상의 소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을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장이 최종 지정(3년 지정)하게 된다.

성수동은 420여 개 업체가 집적된 50년 전통의 수제화 디자인·제조·유통 메카다. 종로는 550개의 주얼리 업체가 디자인과 제조 및 도 소매 유통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문래동은 국내 최고 숙련도의 기술이 집적된 기계금속 밸리로 1,350여 개 업체가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해당 세 지역을 3년간 집중 지원해 활력 넘치고 혁신적인 도시 제조업의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3개 지역에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83억 원이 투입돼 소상공인 공동 인프라가 구축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제공되는데, 공동 제품 전시 판매장, 3D프린터 등 첨단장비를 갖춘 시제품 제작소, 온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공간 등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된다. '소공인특화자금'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로 개척 및 R&D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받을 수 있다. 3개 지역에 있는 총 2,320개* 소공인 업체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적지구 지정을 계기로 기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보다 넓은 개념의 광역형 센터를 공동 운영해 도시형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장전문가 양성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 문래 1,350개, 종로 550개, 성수 4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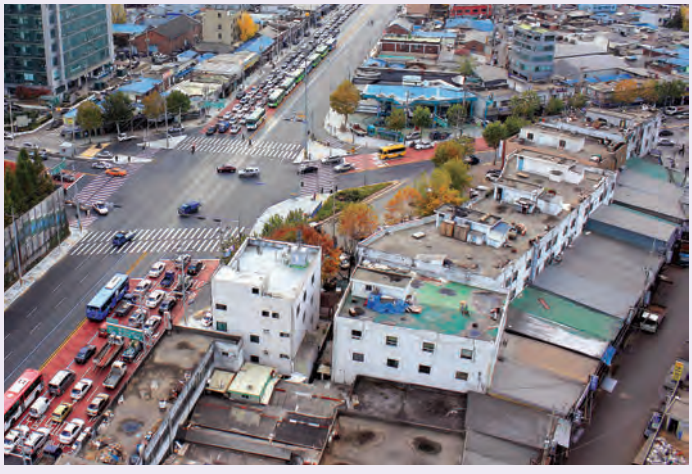

ⓒ서울시

문래동 철공소 거리

녹색건축·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부산시 도시재생과
2017.1.16.

광주시
2017.1.17.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7.2.1.

부산시, 도시재생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함 추진

부산시는 도시재생 사업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복지·보건·고용 등 종합적인 생활서비스 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세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또 60만 호 단독주택지 통합관리 방안에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으로 LED 보급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추진하고, 서부산권 도시재생 특화마을 조성 시 마을의 폐·공가를 활용한 태양광 온실 및 태양광 주차장 조성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역 광장 일원 창조지식플랫폼 건축공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을 위한 도시재생과 클린에너지 연계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에는 클린에너지 비율을 10%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탄소은행제' 대상 확대 운영

광주시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은행제를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단지로 확대해 시행한다. 탄소은행제는 참여 세대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현재 사용량*과 기준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적립한 탄소포인트에 따라 현금·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탄소은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탄소은행 가입 대상을 아파트 단지로 확대해 관내 150가구 이상 아파트 712곳에 대해 150가구 이상, 500가구 이상 등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량, 탄소은행 참여도, LED등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해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은행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다이어트'에 융자 지원

서울시가 단열창호, 단열재, 창유리필름, LED조명 등 주택·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융자지원 금액은 총 150억 원으로 사업 금액의 100% 한도에서 주택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건물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1.45%의 고정금리로 최대 8년까지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문절차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정보 제공, 정책 개발 목적으로 공간정보 지도 제작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2017.2.3.

대구시 자연재난과
2017.2.8.

인천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후지도' 제작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온실가스 실태조사와 기후영향인자 분석 등을 통해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후지도 제작을 통한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도시는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창조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도시 형태로,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후지도 제작을 통한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지역별 실태조사 ▲에너지 사용량 조사 ▲폭염 및 여름일수 등 기상인자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지 대표지점 10곳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청량산·계양산 내 쉼터 각 2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조사·분석하고, 여기에 온도 및 폭염일수 등 기후관련 요소를 통합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기후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대구시, 침수예상지역 정보 담은 '재해정보지도' 제작

대구시가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대피 경로, 안전대피소, 응급의료기관, 공공기관,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이 수록된 재해정보지도를 올해 말까지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토대로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게 된다. 침수흔적도는 과거 침수 발생 내역을 전수 조사해 침수 시기, 침수 범위 등을 지형도와 지적도에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침수예상도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 70mm 이상의 폭우가 발생할 경우 내수침수 시나리오별 수치 계산을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을 적용해 침수예상지역 등을 예측해 작성한 지도이다.

시는 이러한 기반자료와 재해정보지도 정보를 자연재해 사전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광주시
2017.1.2.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2017.1.5.

광주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 시행

광주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예방하고 동식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시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2017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 계획 관리지역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상업·공업지역 총 4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1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정된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 안에 개선하도록 하였다. 시는 빛 방사량을 줄이기 위해 측면 배광이 넓은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거나 후사광을 차단하는 차광장치 설치, 광량이 낮은 광원으로 교체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적용대상 조명기구

구분	조명기구 종류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m²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조명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 심의 본격화

앞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은 야경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빛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 시설은 세 가지로 ▲공공업무시설(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박물관), 운동시설(체육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수변조명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이다.

경관위원회는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도 공무원 5명, 경기도의원 2명, 도시계획 및 조명·조경 전문가 26명 등 모두 33명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사 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